

교육감 선거 청소년선거권을 위한 청소년활동가 간담회

I. 취지

2009년 7월30일이 되면 서울시 공정택교육감이 당선 된 지 1년이 됩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이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앞서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청소년활동가들은 교육감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으로 양심 있는 시민세력의 후보가 당선 되었을 경우에 작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시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우리들을 대신해 리를 이명박이 당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직접 기호0번 후보를 세워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는 YMCA와 청소년단체 희망의 회원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시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선거권으로부터의 배제,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선거에서의 배제는 청소년들이 촛불시위와 시국선언 등 사회의 주요한 일들에 적극 나서는 현 시국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선거권에 대한 논란은 이미 만18세 선거권 운동을 하면서 일부 정리가 됐습니다. 선거권의 역사가 노동자, 여성으로 확대되었듯이 점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확대되는 것이 대세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은 만18세 시장이 있을 정도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보장이 돼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또한 2008년 선거권 전체를 18에서 16세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함께 사는 북한 또한 선거연령은 만17세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한국YMCA총연맹이 단체 내에 선거권 2008년에 만15세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촛불시위, 그리고 2009년 청소년 시국선언 등 매 정치적 교육적 사안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보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선거권의 전체적 인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강화시키며 정치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 방안입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의 위치는 두발규제, 체벌, 0교시, 정치적 참여 금지 등 어느 하나 자신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만16세 이상의 청소년선거권은 교육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일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보장해줘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미 공정택교육감의 행보로 교육감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책결정에 청소년들의 의사도 들어가야 합니다. 선거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흐름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가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7월 30일 전후로 교육감선거에서 청소년선거권을 주자는 내용의 골자로 한 법안을 냈으면 합니다.

향후 이 사안이 결정되면 광범위하게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교육감 선거권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발규제, 체벌금지를 담은 '학생인권법'으로 민주노동당이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듯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16세 선거권으로 다시한 번 청소년들에게 힘이 됐으면 합니다.

II. 일정

일시 : 2009년 7월 14일(화) 19:00~21:00

장소 : 민주노동당 중앙당 2층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III. 간담회 내용

토론1.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의 참여보장에 대한 의견 공유

토론2.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내용적 검토[첨부자료 참조]

토론3. 청소년선거권 법 상정을 위한 단체별 활동 토론

토론4. 향후 일정 공유

[첨부자료]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 참여 논거

I. '보호대상'들의 반란- 청소년은 사회의 주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동등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유보당하는 '보호대상', 혹은 '예비 주체'로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3.1독립 운동의 유관순의 사례에서부터 4.19에 이르기까지 10대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활동, 특히 정치활동은 금기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단지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듣는 학생'이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금기를 깨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 정치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의 두발자유화 운동인 '노컷 운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었고, 2002년 이후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에 분노하며 촛불 시위 등의 현장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개최하여 청소년 정치활동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1318정치참여연대,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등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노무현정부-전교조-학원들의 성인들의 관점에서 이뤄진 내신등급제로 인하여 약 20여명의 청소년들이 3월부터 5월까지 자살하면서 '내신등급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에 "잠잠자자! 밥좀먹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 이후 최초 시위를 벌였다. '광우병 위험 美 광우병 소 반대' 촛불시위에 제일 처음 나서면서 우리사회에 정의의 소리가 필요할 때 적극 나서는 것이 청소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 약 3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활동은 청소년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II.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으로 학교현장에서 입시교육이 강화됐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 현상으로는 서울지역에 잠시 주춤하던 0교시와 밤 10시 야자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사고 및 국제중 설립 등 중고등학교 서열체제를 앞장 서 공정택 교육감이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사나 학부모의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억압당하고 더 괴로워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교육을 받는 대상인 학생, 즉 청소년입니다. 이번에 자사고 실시가 거의 확정적인 종로구에 있는 중앙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말합니다. 학교가 자사고가 되면 자신이 3학년때 들어올 그 아이들과 자신들의 차별 당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싫다고 말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빨라졌습니다. 0교시라는 것은 7시30분에 등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에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아침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보충이라고 해서 8교시, 9교시 등 수업이 6시에 끝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아리활동과 학생회 활동이 현실적으로 거의 전멸하고 합니다.

10시까지 이뤄지는 강제야자는 각 학교에 전학생들과 체벌학생을 많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에 신청시키기 위하여 전학을 보낸다고 강요하거나 체벌을 가하는 사례로 곳곳에서 들어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면서 현장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이 없는 것은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2008년 청소년위원회 자체로 촛불시위 동안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약 200명의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촛불 시위때 대학생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낫다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자신의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만 그 권리를 행사하자는 것입니다.

III.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청소년 선거권 설문조사 결과

질문1. 연령대를 알려주세요(총 191명)

- ①10대(21명 / 11%)
- ②20대(49명 / 25%)
- ③30대(59명 / 31%)
- ④40대(46명 / 24%)
- ⑤50대(14명 / 8%)
- ⑥60대 이상(2명 / 1%)

질문2. 청소년(만13세~만18세)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18세 이하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면 찬성. 만19세 이상이면 반대)
(총 191명)

- ①찬성한다(142명 / 74%)
- ②반대한다(49명 / 26%)

질문3. 선거권을 낮춘다면 몇 세까지 낮춰야 할가요?(현행 만19세일 경우 생일지난 20살 및 21살 투표 가능)

(총186명, 미응답 5명)

- ①만18세(56명 / 30%)
- ②만17세(41명 / 22%)
- ③만16세(42명 / 22%)
- ④만15세(19명 / 10%)
- ⑤만14세이하(0명)
- ⑥현행 유지(만 19세) (28명 / 16%)

질문4. 찬성하신다면(만18세 이하를 선택했다면)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총 151명, 중복체크 있음)

- ①청소년이 투표할 정도로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47명 / 31%)
- ②정치권의 정책결정이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78명 / 52%)
- ③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걸 보며 청소년도 투표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7명 / 5%)
- ④10대는 순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투표 할 것이다(6명 / 4%)
- ⑤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삶을 책임져줄 수 없기 때문이다(13명 / 8%)
- ⑥기타 ()

질문5. 반대하신다면(만19세 이상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총 62명, 중복체크 있음)

- ①청소년은 투표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15명 / 22%)
- ②청소년 시기는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5명 / 8%)
- ③10대는 연예인이나 혹은 대중매체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9명 / 15%)
- ④청소년들은 출마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12명 / 19%)
- ⑤정치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17명 / 27%)
- ⑥기타(4명 / 9%)

질문6. 현재 피선거권(출마할 수 있는 권리)이 만 25세로 돼 있습니다. 피 선거권은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158명, 미응답 33명)

- ①만24~23세(24명 / 15%)
- ②만22~21세(19명 / 12%)
- ③만20~19세(46명 / 29%)
- ④만18세~17세(17명 / 11%)
- ⑤만16세 이하(4명 / 3%)
- ⑥현행 유지(만 25세)(48명 / 30%)

질문7. 올해 2008년부터(2010년 지방선거때 선거)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①알고 있다(124명 / 65%)
- ②몰랐다(67명 / 35%)

질문8.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찬성한다(169명 / 88%)
- ②반대한다(22명 / 12%)

2. 청소년 선거권 설문조사 분석

청소년 정치참여법을 제기한 배경

- 촛불정국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의 시도와 양이 눈에 띄게 달라졌음
- 그동안 청소년을 어리고 미성숙하게 보아온 사회적 인식이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아졌음
- 이에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청소년계가 지지하는 형태의 법안 상정 필요
- 추가로 YMCA는 총회에서 올해부터 선거권을 만 15세 이상으로 변경
- 정당에 청소년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정당가입이 되지 않는 문제 변경(이미 유럽은 10대 초반부터 정당가입 가능, 영국의 토니블레어는 16세에 정당가입하여 총리까지 된 대표적 인물, 독일 총리 슈뢰더도 비슷한 사례)

설문 내용 분석

- 위에서 보듯이 청소년선거권에 대해서 찬성비율이 74%가 됨, 비록 촛불문화제 참가자들 대상으로 했으나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진보 보수라기 보다는 이땅에 양심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 이전과 비교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큼
- 선거연령 인하는 18세가 비교적 많고 17세 16세도 22%정도가 될 정도로 선거권 하향에 필요성을 느낌
- 그리고 이번 광우병 싸움을 통해 정책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공감함. 그래서 청소년 정치참여의 찬성 이유로 정책결정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는 점에 50%이상이 공감.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교육주체인 청소년이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 가까이 됨

IV. 교육감 청소년선거권으로 인한 기대효과

① 청소년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으로서 지위를 굳힐 수 있음

-2006년 학생인권법 발의로 인해 청소년계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위는 매우 커졌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3일 권영길의원의 '학생인권법'의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

② 청소년들의 우리사회의 당연한 한 주체로서의 선언을 선거권을 통하여 법적으로 해결

-체벌, 학생에 대한 성희롱, 교사에 의한 일상적 인격모독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선거권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높일 수 있다.

③ 교육문제의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뽑는 상징성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주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이다. 이런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에 참정권 보장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④ 청소년 선거권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

-노동자가 처음 선거권을 반대할 때 부르주아는 노동자는 판단미숙을 근거로 들었다. 그 다음 여성들이 선거권을 가질 때 남성과 일부 여성은 남자들이 하는대로 같은 사람에게 투표할 것인데 투표권을 주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가로 막는 이유는 위의 2개의 논리가 위의 두 가지이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4.19부터 6.10 시국선언까지 청소년들의 사회·정치적 행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들의 역사의 진정한 주체로 보는 거라고 본다.

V. 교육감 선거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권영길 의원실]

① 현재의 상황 검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실제 선거관련 조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② 수정에 대한 검토

- 실제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과급이 크기 때 문에 수정이 어려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수정 형태로 가는게 맞음.

- 제22조에 "16세 이상의 국민은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단, 초·중·고·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당해 학교의 주소지의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이

있다."(가안) 정도의 내용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듯.

3. 실제 추진 관련 예상

- 교육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임.
- 정치중립적인 교육감 선거의 문제이지만, "선거"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임.
-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능력 문제부터, 교사들의 영향력에 대한 문제, 교총의 조직적 저항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음.
- 추후 타국의 사례와 여론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설득의 논리가 필요.
- 법안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